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72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정희용 · 박준태 · 백종현
김기웅 · 강대식 · 김선교
김상훈 · 최수진 · 박충권
이인선 · 박덕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4.8.)으로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한 일반골프장과는 다른 별도의 체육시설로 보아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실외체육시설,”을 “실외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u>실외체육시설</u>,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준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 마. (생략) 1의2. ~ 9. (생략) ② ~ ⑪ (생략)	----- 가. -----<u>실외체육시설</u> (<u>파크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u>),----- ----- ----- ----- ----- ----- ----- -- 나. ~ 마. (현행과 같음) 1의2. ~ 9.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	--